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67
----------	-----

제출일자 : 2013. 12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통합 시행되고,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지역정보화를 위한 기본원칙, 역기능 방지 등 지역정보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추진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
- 나.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 제시(안 제3조)
- 다. 지역정보화 추진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보화추진위원회 설치·운영(안 제5조)
- 라.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정보화책임관에게 타당성 및 중복성 검토 사전 협의(안 제9조)
- 마.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정보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징수(안 제14조)
- 바. 정보화 역기능 방지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안 제16조, 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5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9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3. 10. 30. ~ 11. 19.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보건복지·교육·문화·환경·도시건설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 마련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지역정보화 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정보화기본계획과 대구광역시 정보화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및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구성에 있어 한쪽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계획의 중요 사항 변경 및 지역정보화 정책 사업의 조정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4.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보호 및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8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보건복지·교육·문화·환경·도시건설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정보화사업의 사전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정보화 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
2.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및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등
3.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자체개발 가능 여부
4. 관련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군수는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비스 제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감면비율에 관한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며, 수수료는 군수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정보화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 지원
2. 제1호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3.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제1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관련 중앙부처 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5조제2항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 종전위원의 임기기간을 고려하여 위원변경 위촉 시 단계적으로 비율을 맞춰가도록 한다.

【별표】

수수료 산정 기준(제14조제4항 관련)

구 분	내 역		산 출 기 초
자료 제공에 따른 수수료	기 계 사용료	렌 탈, 리 스	월 금액×CPU시간÷월평균CPU사 용시간
		구 매	구매가격÷5÷12×CPU시간÷월평균 CPU사용시간
	인 건 비 (SA, PG, OP)		6급10호봉 월평균보수÷30×작업 일수
	소 모 품 비		실비
	제 잡 비		위 전체 금액의 10%
	여비, 기타		실비
수수료 감면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 제공하는 경우		면제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제 공이 지연되었을 경우		과다 소요시간/전체 소요시간
	3. 그 밖에 군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비고>

1. 월평균CPU사용시간 = 전년도 월평균 CPU사용시간의 평균
2. 월평균보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
한 규정」에 따른 월평균보수
3. 기계사용료 : 렌탈 또는 리스계약 만료 후 소유권 이전사용시 구매가격
은 최초 계약당시 구입기준가격으로 함

참고 1**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 이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 등은 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공공정보화"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지역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지식·정보의 공유·유통) 국가기관등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창출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 공유·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

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시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3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9조(개인정보 보호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등) ① 법 제3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에 따라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제품의 활용성
2. 지원대상자의 정보통신제품 활용 능력
3. 지원대상자의 경제적 여건

제34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1.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결혼이민자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5.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6. 삭제 <2009.11.26>
 7.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은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④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컴퓨터와 인터넷 등에 관한 기본교육
 2.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가공 및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